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5. 12. .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12월 9일

○ 회부일자 : 1995년 12월 9일

3. 제 안 이 유

기금관리담당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

4. 주 요 골 자

- 기금의 예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는 규정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로 개정
-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지방재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

5. 검토 보고

(전문위원 김 영 만)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제4조2항중 기금의 예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 제4조 4항중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영관리)1항이 개정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 조례안 : 별 첨

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 6 호(부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충청북도)..... 371
2.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376
3.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충청북도)..... 386
4.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391